

의안번호	제 367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7월 13일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연월일	2012년 7 월 4 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367
----------	-----

제출연월일: 2012년 7월 4일

제출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정에 관한 질문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정에 대한 질문 제목 변경 (안 제73조의2)
 - “도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변경
-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 구체적인 질문요지서 작성 제출 (안 제73조의2제3항)
 -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중 “도정에”를 “집행부에”로 하고, 제1항 중 “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을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이라 한다)을”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일괄질문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4일 전(질문일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답변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의2(도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다.</p> <p>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본회의 개최시간 4일 전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교육감은 답변일 본회의 개최시간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73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 -----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대집행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의원 수는 의장이 회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일괄질문답변의 경우에는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일 4일 전(질문일과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및 교육감은 답변일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